

2005. 9.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8.23	2005. 8.23	2005. 8.29	2005. 8.29	기획감사과장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기획감사과장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	"	"	사회복지과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5. 7.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휴가제도, 중식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안 제13조)
 -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함
 - 중식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
- 토요일 휴무제 규정 삭제(현행 제16조의 2 삭제)
- 휴가일수 축소 또는 폐지(안 제23조, 별표 3)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함
 -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일수 축소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폐지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안 제26조)

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인력 등을 증원하고 직급별 분포비율 변경에 따라 직급을 상계 조정함

2)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1,272명 ⇒ 1,281명(9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제1호)

- 1,253명 ⇒ 1,262명(9명 증)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

- 본청 : 증 8명(6급 1명 / 7급 2명 / 8급 3명 / 9급 2명)

- 동 : 증 1명(9급 1명)

다. 충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골자

○ 명예시민증 수여절차 조정(안 제2조)

- 국내인사는 충주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심사 결정하여 수여토록 단서조항 신설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분만 감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물분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율을 조정

2) 주요골자

-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토지건물) 감면, 세율을 현행 2/1,000에서 1.5/1,000로 인하 (안 제27조제2항)

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5. 7. 31)됨에 따라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심의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
 - 사회복지계획 수립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 및 협력업무 수행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안 제4조)
 -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3항)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 지원(안 제15조)

바.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안 제5조)
- 기금의 재원(안 제6조)
 - 충주시 출연금
 -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의 10% 등
- 기금의 용도(안 제7조)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업
 -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및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1조 내지 제15조)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지원 또는 공동사업 등 결정
 -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가구별 지원 및 지원사업 실시
 -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을 주거환경개선, 난방비 지원, 건강진단비, 상수도 사용료 등으로 한정
-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2005. 7.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민원편의를 위한 중식시간의 조정,
특별휴가 일수의 축소 등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변화된 근무여건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의 한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사무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요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직급별 분포비율 변경에 따라 인력 증원과 함께
해당 직급의 상계 조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우선, 인력증원은 모두 9명으로

이는 지난 2005.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군별로 소관 사회복지계획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기가정 지원업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난 6. 3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추진계획」(전국 1,830명)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3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2006.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전담인력 1명의 증원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금번 9명의 인력 증원은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적기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편의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6월말 기준 시의 보정정원인 1,272명을 9명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정원이 보정정원대비 0.7%를 초과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시는

도내 각 시군의 평균 보정정원 초과비율 3.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과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 직급상계 조정은

일반직 6급 13명, 기능 7급 4명, 기능 9급 2명 등 총 19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진급 정체 해소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등 일부 직급의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번 정원 조정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충주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을 비롯한
타 지역 국내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들 인사들이 충주를 떠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 '96년에 조례로 제정,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세계무술축제, 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 등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22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 금번 조례 개정은
그 동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절차를 내국인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필요시 적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림은 물론, 시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제2조 제1항에 내국인에 한하여 예외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검증과정에 다수인의 참여가 배제되고 이로 인한
시민증의 남발 우려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나
의회 회기 등에 상관없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
장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 공존하는 제로섬(Zero-Sum)적
사안인 점을 감안,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규칙에 객관적이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비회기중의 사전 협의 절차를 두는 방식의 절충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도내에서 충북도와 7개 시군 등 모두 8개 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충북도와 영동군, 음성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2005. 1.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종전 향교재단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의 해당 감면규정이
사문화되거나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 개정지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분 뿐만 아니라 건물분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세율을 종전 1,000분의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2005. 7. 31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의 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시도로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과 제3조 제2항 제4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각각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추후 대표협의체 구성후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 제3항에 상근의 유급직원의 정원 및
급여 등에 관한 규정은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고
향후 보다 원활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각 시군에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과 건립예정인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원협의체” 등을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폐기물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등
폐기물시설관련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외부 감독과 통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어려움,
주변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 다음은 각 조항별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 우선,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경우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바,
단서 조항으로 규정한 ‘협약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사료되고
추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시 사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제9조 제2항에서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한 규정은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다음, 제17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시의회에서 선정토록 한 규정은 오히려 폐기물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직급별 상계 조정하는 내용은?

○ 답변 :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이 23%에서 26%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15명, 금년도에 13명을 조정하는 것임

다. 충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시민증 수여 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는 사유는?

○답변 : 관내 기관장으로 있던 분들이 임기종료가 되었을 때 즉시 시민증을 수여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질의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원화하는 이유는?

○답변 : 실무적인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다루어 대표협의체에서 의결

▶질의 : 공동위원장 선출방식은?

○답변 : 임명직과 위촉직에서 각 1인을 호선

바.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직접영향권 내에 지원 협조도 가능한가?

○답변 : 우리시의 경우는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은 없습니다

▶질의 :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간 구분 한계에 대한 분쟁 소지는?

○답변 : 관련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분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 결
- 시민증 남발 우려 등 개정함이 부적절함
-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바.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부
- 바.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